한국전력공사

배전공사 시공회사 인센티브·패널티 제도 업무절차서

업무표준 번호 : H0-배전-절차-73

제·개정번호 : 05

제·개정일자 : 2026. 10. 01

2022. 10. 30	제 정
2023. 4. 17	1차개정
2024. 10. 15	2차개정
2025. 3. 31	3차개정
2025. 9. 29	4차개정
2026. 10. 01	5차개정

작 성 자	정 걸 (배전계획처 배전건설부 차장)
검 토 자	김 진 하 (배전계획처 배전건설부장)
승 인 자	이 경 윤 (배전계획처장)

배전계획처	배전공사 시공회사 인센티브·패널티 제도 업무절차서	업무표준 No	H0-배전-절차-0073	
		개정·페이지	05	2/43
		제·개정일자	2026. 10. 01	

1. 구 분

① □ 제 정

② ■ 개 정 (■ 일반개정, □ 간이개정)

2. 적용범위

① ■ 전사 적용

② □ 본사 적용 (특수사업소 포함)

③ □ 사업소 적용(부서명 :)

3. 운영 부서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성명	서명	일자	성명	서명	일자	성명	서명	일자
정 걸	정걸	'26.9.2	김진하	김진하	'26.9.2	이정윤	이정윤	'26.9.2

4. 관련부서 합의

소 속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안전혁신단	단장	김동민	김동민	26. 9. 9
배전운영처	처장	곽상영	곽상영	26. 9. 9.

5. 업무표준 주관부서 검토(ERP 등록시 준법경영실 합의결재선 자동지정)

6. 사규 관리부서 검토(전사공통적용 지침·기준, 정보공개 및 제·개정 예고대상)

직 책	성 명	검토 결과	일 자

7. 일상감사(전사공통적용 지침·기준)

직 책	성 명	검토 결과	일 자

담당 : 배전계획처 배전건설부 차장 정 걸(☎061-5223)

제 · 개정 이력

Ver	개 정 내 용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승인일자	비 고
00	배전공사 전문회사 인센티브·패널티 제도 업무절차서 제정	이순선	김성민	정치교	2022.10.30	제정
01	단체상해보험 가입 및 대표자 안전관리 인센티브 추가, 문구 수정	김태욱	김성민	정치교	2023.04.17	1차개정
02	· 인센티브·패널티 평가 항목 개편 · 패널티 마일리지 단계별 중간제재 도입 · 누적 마일리지 차기계약 적격심사 반영 등	표창윤	김성민	김재국	2024.10.15	2차개정
03	· 인센티브·패널티 관리방안 명확화	김수인	김진하	이경윤	2025.03.31	3차개정
04	· 인센티브·패널티 항목 개정	김수인	김진하	이경윤	2025.9.29	4차개정
05	· 인센티브·패널티 제도운영 및 항목 개정	정 걸	김진하	이경윤	2026.10.01	5차개정

차 례

1. 목 적 ---- 5

2. 적용범위 ---- 5

3. 책임사항 ---- 5

4. 용어의 정의 ---- 6

5. 참고자료 ---- 7

6. 인센티브·패널티 제도 운영 ---- 7

7. 배전 협력회사 인센티브·패널티 부여 ---- 11

8. 배전 총액계약 시공회사 인센티브·패널티 부여 ---- 20

9. 성과보상 ---- 27

10. 유효성 평가 ---- 28

11. 부 록

[별표 1] 배전 시공회사 마일리지 관리 업무 흐름도 ---- 30

[별표 2] 배전 시공회사 계약해지 절차도 ---- 31

[별표 3] 시공통보 이행지연 패널티 업무 절차도 ---- 32

[별표 4] 정책반영 인센티브 부여 업무 절차도 ---- 33

[별 첨] 공통서식 ---- 34

1. 목 적

본 절차서는 배전공사 시공회사의 시공품질 및 안전분야에 대하여 자발적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시공회사와 업무담당자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인센티브·패널티 제도의 명확한 업무처리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2.1 이 절차서는 배전공사 시공회사(배전 협력회사 및 배전 총액계약 시공회사)에 대한 마일리지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2.2 이 기준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규정,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및 배전 총액계약 시공회사 관리절차서를 따른다.

3. 책임사항

구 분		책 임 사 항
주관부서	배전계획처장	◦ 배전 시공회사 인센티브·패널티 제도 절차서 제·개정 및 폐기 승인
	배전건설부장	◦ 배전 시공회사 인센티브·패널티 제도 절차서 제·개정 사항 검토 및 지시 ◦ 배전 시공회사 인센티브·패널티 제도 절차서 폐기 검토 및 지시 ◦ 배전 시공회사 인센티브·패널티 제도 절차서 유효성 평가 확인
	담 당 차 장	◦ 배전 시공회사 인센티브·패널티 제도 절차서 제·개정 및 폐기(안) 작성 ◦ 배전 시공회사 인센티브·패널티 제도 절차서 유효성 평가 관리
관리부서	전력사업처장	◦ 1차 사업소내 배전 시공회사 인센티브·패널티 제도 총괄
	부 장	◦ 1차 사업소내 배전 시공회사 인센티브·패널티 제도 이행 여부 관리
	담 당	◦ 1차 사업소내 배전 시공회사 인센티브·패널티 제도 이행 여부 총괄
수행부서	사업소장	◦ 직할 또는 2차 사업소 내 배전 시공회사 인센티브·패널티 제도 운영 총괄
	부(팀)장	◦ 직할 또는 2차 사업소 내 배전 시공회사 인센티브·패널티 제도 운영 검토 및 승인
	담 당	◦ 직할 또는 2차 사업소 내 배전 시공회사 인센티브·패널티 제도 운영 및 누계관리

4. 용어정의

4.1 인센티브

배전공사 시공회사의 시공품질 및 안전분야의 자발적 역량강화를 위해 제공하는 혜택으로써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관리

4.2 패널티

배전공사 시공회사의 시공품질 및 안전분야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는 불이익으로써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관리

4.3 누적 패널티

계약번호 단위로 관리되는 패널티로써, 공사계약 기간 동안에만 적용하며 위약벌 부과 기준으로 활용

4.4 마일리지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하기 위해 산정하는 단위

4.5 합산 마일리지

가용 인센티브 마일리지(취득 인센티브-사용 인센티브)에서 패널티 마일리지를 차감한 점수로써,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관리하며 적격심사시 안전경영노력도 가점항목으로 활용

4.6 주관부서

이 절차서의 운영을 총괄하며, 기본방침을 수립하는 부서

4.7 관리부서

1차사업소에서 배전공사 시공회사 인센티브·패널티 제도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

4.8 수행부서

직할 또는 2차사업소에서 배전공사 시공회사 인센티브·패널티 제도 업무절차서를 활용하여 시공회사의 가점 및 감점을 부여하고 관리하는 협력회사 담당부서

4.9 업무담당자

협력회사를 관리하는 부서 담당자

4.10 공사담당자

배전공사를 발주하고 관리하는 담당자

4.11 이 절차서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사내 업무표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참고자료

5.1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배전 총액계약 시공회사 관리절차서

5.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규정, 계약업무처리기준

5.3 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절차서

5.4 지중 배전공사 시공회사 업무절차서

5.5 배전기초인력 교육·자격관리 절차서

5.6 공사계약 일반조건

5.7 안전계약 특수조건

6. 인센티브·패널티 제도 운영

6.1 적용대상 : 배전공사 시공회사(배전 협력회사 및 총액계약 시공회사)

6.2 인센티브·패널티 관리

6.2.1 시공회사별 취득한 인센티브, 패널티 마일리지는 영업배전시스템(이하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며, 인센티브 마일리지, 패널티 마일리지 및 합산 마일리지 항목을 각각 관리한다.

6.2.2 인센티브, 패널티 마일리지는 상호, 대표자명 등과 무관하게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관리되며, 사업자간 합병(분할합병 포함)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없이 존속하는 업체에 한해 기존 마일리지를 승계한다.

6.2.3 인센티브, 패널티 마일리지는 계약유형(단가계약, 총액계약)에 상관없이 합산 관리한다. 단, '6.4'항에 따른 누적 패널티에 따른 단계별 제재(이하 '누적 패널티 제재')는 계약번호 단위의 누적 패널티에 따른다.

6.2.4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관리되는 인센티브, 패널티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마일리지가 확정된 직전분기 이전으로부터 4년까지이며 유효기간이 지난 미활용 인센티브, 패널티 마일리지는 소멸한다. 단, 합산 마일리지를 활용한 차기 협력회사 입찰시에는 '6.7.2.가)'항의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6.2.5 계약번호 단위로 관리되는 누적 패널티 마일리지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소멸한다. 누적 패널티 마일리지는 소멸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관리되는 패널티 마일리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2.6 계약유형별 인센티브, 패널티 마일리지 부여는 본 절차서 7장, 8장을 따르며, 절차서 개정에 따라 인센티브·패널티 항목 및 배점이 변경된 경우 상시 개정된 내용에 따른다.

6.2.7 본 절차서에 따른 패널티 마일리지는 안전계약특수조건의 패널티와 별도로 운영한다.

6.3 합산 마일리지 관리

6.3.1 합산 마일리지는 '7.3'항에 따른 배전 협력회사 인센티브·패널티 분기평가 절차에 따라 매분기 단위로 갱신되며, '8.3'항에 따른 총액계약 시공회사 인센티브·패널티 분기평가 절차에 따라 매분기(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계 제출 전) 단위로 갱신한다.

6.3.2 분기 단위로 확정된 합산 마일리지는 확정 이후 취득한 인센티브, 패널티 마일리지에 대해 다음 분기 확정 전까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단, 계약해지에 따른 합산 마일리지 초기화는 제외한다.

6.3.3 합산 마일리지는 조회 당일 기준으로 이전 분기에 확정된 과거 4개년의 인센티브, 패널티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계산한다.

가) 합산마일리지 = 가용 인센티브 마일리지(취득 - 활용) - 패널티 마일리지

6.4 누적 패널티에 따른 단계별 제재

6.4.1 계약건별 시공회사의 누적 패널티 마일리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재를 부여하며, 위약벌 부과 시마다 해당 누적 패널티 마일리지는 소멸 처리한다.

구 분 \ 패널티		1,000점	2,000점	3,000점
위약벌	배전 협력회사	1,000만원	2,000만원	계약해지
	총액계약 시공회사	1,000만원	2,000만원	계약해지* 또는 3,000만원

* 전체 공사기간(절대공기) 중 잔여기간이 50% 이상일 경우에만 계약해지 처리

가) 배전 협력회사의 경우 누적 패널티가 각 단계별 점수를 도달할 때마다 계약기간 내 1회에 한하여 제재를 적용한다.

나) 총액계약 시공회사의 경우 준공계 제출 시점에 누적 패널티가 각 단계별 점수를 도달했을 경우 제재를 적용한다. 단, 총액계약 시공회사가 준공계 제출 이전 3,000점에 도달할 경우에는 공사 진행중이더라도 제재를 적용하며, 계약해지 대상이 아닌 위약벌(3,000만원)을 부과하여 누적 패널티가 소멸된 경우이더

라도, 이후 발생되는 누적 패널티에 대해 준공계 제출 시점에 각 단계별 제재를 추가 적용한다.

※ 타 기준(절차)서의 제재 항목으로 인한 위약벌과 동시 발생시 별도 적용한다.

6.4.2 위약벌 부과에 따른 조치사항은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13.1.3항' 및 배전 총액계약 시공회사 관리절차서 '11.1.4'항에 따른다.

6.4.3 누적 패널티는 계약체결일부터 조회 당일 기준으로 5일 전까지 확정된 누적 마일리지로 적용한다.(단, 시공회사에서 이의사항 제기시 해당 항목 패널티는 제외)

6.4.4 누적 패널티 마일리지가 2,000점, 2,500점, 3,000점 초과하는 경우 대표사업소 협력회사 업무담당자(또는 총액공사 공사담당자)와 해당 시공회사로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통보되며, 누적 패널티 마일리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다. 대표사업소 협력회사 업무담당자(또는 총액공사 공사담당자)는 누적 패널티 마일리지가 2,500점, 3,000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시공회사에 문서로 안내한다. (부록 [서식 3], [서식 4] 참고

6.5 인센티브 마일리지 활용

6.5.1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13.1.2'항, 배전 총액계약 시공회사 관리절차서 '11.1.3'항 및 본 절차서 '6.4'항에 따른 위약벌은 시공회사가 보유한 인센티브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감경(1점=1만원, 위약벌의 100%까지 감경가능, 3,000점 초과인 경우에는 '6.5.2'항 적용)할 수 있으며, 시공회사는 인센티브로 위약벌을 감경하고자 할 경우 [서식 5]에 따라 위약벌 감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5.2 계약건별 누적 패널티 마일리지가 3,0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시공회사가 보유한 인센티브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누적 패널티 마일리지를 최대 1,000점까지 차감할 수 있다(차감 마일리지와 별개로 계약기간내 1회에 한함).

6.5.3 '6.5.1~6.5.2'항에 따라 차감되는 패널티 마일리지는 계약번호 단위 누적 패널티 마일리지이며, 합산마일리지에 활용되는 사업자번호 단위 패널티 마일리지는 차감되지 아니한다. 또한, 위약벌 및 누적 패널티 마일리지 감경에 활용된 인센티브 마일리지는 소멸하여 재사용이 불가하며, 합산 마일리지 계산시 취득한 인센티브에서 차감된다.

6.6 계약해지

6.6.1 본 절차서 '6.5.2'항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마일리지가 부족하여 패널티 마일리지 차감이 불가하거나, 차감 후에도 누적 패널티 마일리지가 3,000점을 초과

하는 경우 또는 패널티 마일리지 1회 차감 후에 다시 3,000점에 도달한 경우 해당 시공회사는 계약해지 요건이 된다.

6.6.2 계약해지 대상 결정은 '6.8'항의「마일리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시행하며, 계약해지 대상으로 결정 시 [별표 2]에 따라 계약해지에 대한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6.6.3 시공회사 계약해지 시「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및「배전 총액계약 시공회사 관리절차서」에 따라 잔여공사의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6.6.4 본 절차서 '6.6.2'항 및 안전계약특수조건에 따라 계약기간 내 계약이 중도해지 될 경우 해당 시공회사는 계약해지 대상 계약건으로 취득한 인센티브, 패널티 마일리지가 모두 소멸되며, 계약해지일 기준 차기 4년간의 입찰(입찰공고일 기준)에서 적격심사 안전경영노력도 가점 0점을 적용한다.

6.6.5 계약해지된 시공회사가 우리회사에서 발주한 타 배전공사 수행시, 6.6.4항에 따른 적격심사 가점 반영 외 인센티브, 패널티 마일리지 부여 및 활용은 본 절차서에 따라 운영한다.

6.6.6 본 절차서에 따른 계약해지 외 기타 사유에 의한 계약해지는 안전계약특수조건,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배전 총액계약 시공회사 관리절차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을 따른다.

6.7 합산 마일리지의 적격심사 가점 반영

6.7.1 합산 마일리지는 차후 우리회사가 발주한 공사의 적격심사시 안전경영노력도 (가점) 항목 평가시 활용된다.

6.7.2 적격심사 가점 부여기준

가) 적격심사 가점은 입찰공고일이 속한 분기의 2분기 이전의 확정된 합산 마일리지를 활용한다.

ex1) '26.11.4(4분기) 입찰공고시 '26.2분기('22.3분기~'26.2분기)의 확정된 합산 마일리지 활용

ex2) '27. 4.1(2분기) 입찰공고시 '26.4분기('23.1분기~'26.4분기)의 확정된 합산 마일리지 활용

나) 합산 마일리지에 따른 적격심사 가점은 아래와 같이 부여한다. 단, 우리회사가 발주한 공사 수행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재사실 통보서 발행일 기준 차기 4년간의 입찰(입찰공고일 기준)에서 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구분	합산 마일리지 < 0	합산 마일리지 = 0	합산 마일리지 > 0
가점	0점 (계약해지업체 포함)	0.1점 (신생업체* 포함)	0.2점 ~ 1.0점 차등적용

* 신생업체란 '6.7.2.가)'항의 적격심사 가점 부여 기간동안 우리회사에서 발주한 배전공사를 계약한 실적이 없어, 안전경영노력도 가점이 조회되지 않은 업체를 의미함

6.7.3 안전경영노력도 가점은 '합산 마일리지>0' 인 배전공사 시공회사(계약해지 및 사망사고 발생 업체 제외)에 대하여 구간별 차등 적용한다.

구간	상위 20%이내	상위 20%초과 40%이내	상위 40%초과 60%이내	상위 60%초과 80%이내	상위 80%초과
가점	1.0점	0.8점	0.6점	0.4점	0.2점

※ 합산 마일리지가 동점인 경우 동점자 모두 높은 구간의 가점 부여

6.7.4 적격심사 가점은 협력사의 경우 '27년 계약('26년 입찰공고)부터, 전문회사의 경우 '29년 계약('28년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적격심사 가점 부과기준 및 차등 적용기준은 추후 변동 가능)

6.8 인센티브·패널티 마일리지 심의위원회 운영

인센티브·패널티 마일리지 심의위원회(이하 '마일리지 심의위원회')는 시공회사가 마일리지 부여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계약해지 대상이 되는 경우 등 필요시 수시로 운영한다.

6.8.1 위 원 장 : 지사장(본부 직할은 전력사업처장)

6.8.2 위　　원 : 위원장이 임명하는 배전 3직급 이상으로 해당 사업소 및 인접사업소를 포함하여 5명 이상 구성(1차 사업소 소속 2명 이상 포함)

6.8.3 심의시기 : 심의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6.8.4 심의대상

가) 가·감점 부여에 대해 시공회사의 이의제기 시

나) 누적감점이 3,000점을 초과하여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8.5 위원회 임무

가) 마일리지 부여에 대한 시공회사의 이의제기 시 타당성을 검토한다.

나) 누적 패널티가 3,000점 초과될 경우 계약해지 대상여부를 검토한다.

7. 배전 협력회사 인센티브·패널티 부여

7.1 적용대상 : 배전 협력회사(배전 전문회사, 배전 협력사 및 배전 저압 협력회사

/ 이하 '협력회사')

7.2 인센티브·패널티 마일리지 부여방법

7.2.1 협력회사의 인센티브 마일리지 부여는 시스템을 통해 계약기간 내 매분기 단위로 시행한다.

7.2.2 패널티 항목은 '7.3'항에 따라 시스템을 통해 자동 산출되는 항목은 제외하고, 발생 즉시 업무담당자가 부여(누적 패널티는 시스템을 통해 즉시 제재 등록,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관리되는 패널티는 매 분기평가 이후 적용)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잔여(하자)공사 수행시에도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관리되는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가) 협력회사는 패널티 부여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재등록 후 5일 이내 [서식 2] 양식을 활용하여 업무담당자에게 이의를 신청한다.

나) 협력회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업무담당자는 이의신청 사유를 검토하고, 필요시 10일 이내 마일리지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계약의 계약해지 여부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해 '7.3.4'항의 분기평가 마일리지 심의위원회에서 함께 심의할 수 있다.

7.3 인센티브, 패널티 마일리지 분기평가

분기말 기준	수행주체	내 용
D+10	시스템 자동배치	○ 시스템 자동계산 항목 평가, 등록 가·감점 내역 집계
D+11 (업무시작)	업무 담당자	○ 시스템 산정내용 확인 → 업체통보
D+16	협력회사	○ 인센티브 입력(증빙첨부), 시스템 산정 내역 이의신청
D+30	업무 담당자	○ (이의신청無) 협력회사 입력내용 확인 및 확정
		○ (이의신청有) 이의신청건 검토, 필요시 마일리지 심의위 상정
		↳ 마일리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심의결과 입력 및 확정
D+31	시스템 자동배치	○ 마일리지 최종 집계 및 합산마일리지 갱신(파트너스웹 포함)

7.3.1 매분기 마감 10일 이후 업무담당자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산정된 직전분기 인센티브, 패널티 마일리지에 대해 확인한 후 업체에 통보한다.

7.3.2 협력회사는 직전분기의 인센티브, 패널티 마일리지를 통보 받은 후 5일 이내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시스템에 입력하고, 필요 서식 및 증빙자료를 대표사업

소에 제출한다.

가) 인센티브 : 시스템 자동산정내역 확인, 인센티브 추가·수정사항 제출(증빙첨부)

나) 패 널 티 : 시스템 자동산정내역 확인, 직전분기 집계내역 확인(이의신청 완료건) 및 [서식 2] 활용 추가 이의신청(이의신청 완료건 재신청 불가)

7.3.3 업무담당자는 '7.3.2'항의 협력회사 입력내용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5일 이내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해당 분기의 인센티브, 패널티 마일리지를 확정한다. 업무담당자는 협력회사 입력내용 및 증빙이 불충분한 경우 협력회사에 추가로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후 3일 이내 적절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입력사항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7.3.4 협력회사의 이의신청건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해 심의가 필요한 경우 업무담당자는 이의접수 10일 이내 마일리지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업체에 통보한다.

7.3.5 분기평가 기간 내 입력되지 않은 인센티브 마일리지는 추후 소급하여 부여하지 아니한다.

7.4 인센티브 마일리지 평가항목(협력회사)

평가항목	평가방법		가점	주기
① 무정전 전공 고용 유지 (전문회사)	기준	전문회사 상근Ⅰ인력 중 무정전전공(5명 이상)이 1년간 인원 변동없이 지속 고용 및 작업 투입여부 확인 시	250 275 300	1년차 2년차 3년차
	확인	작업통보서와 QR 점검실적 및 영업정보시스템을 통한 상근 인원 변경이력 확인		
② 근로자 재해 대책	기준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 시	100	계약시
		단체 상해보험 가입 시 주1) 협력회사(전문회사, 협력사, 저압 협력회사) 상근Ⅰ최소 확보 대상인원 이상	50	매분기
	확인	분기별 보험가입증서 제출		
③ 안전관리 우수협력회사	기준	본사주관 안전관리 우수협력회사 선정시(년 1회) 주1) 시공회사별 1회 적용(다수 공사 적용 불가)	500	선정 시
	확인	우수협력회사 선정 공문 제출		
④ 안전관리 위탁/선임	기준	법정 비대상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자 위탁 유지시	75	매분기
		법정 비대상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자 선임 유지시	150	
		주1) 시공회사별 1회 적용(다수 공사 적용 불가)		
	확인	분기별 안전관리자 선임 필증 혹은 위탁계약서 제출		
⑤ 대표자 안전관리 활동	기준	협력회사 대표자 주관 현장 안전점검 - 자체점검 : 30점/건 주1) 재해방지책임자가 점검시작 QR을 전송하고, 30분 이후 종료 QR 전송건에 대해서만 인정(당일 안전점검 지적 시 무효)	30 (최대 900/분기)	건
	확인	자체점검표, 점검사진(현장식별이 가능토록 입간판 포함하여 촬영) 제출 [서식6~7] 및 대표자 QR 실적 확인 후 시스템 자동 산정		
⑥ 장비 교체	기준	계약기간 내 장비, 공구의 신품 구매 및 교체 - 항목별 가점 : 절연버켓트럭(150), 이동용 변압기차 또는 장치(75), 바이패스케이블(75), 공사용개폐기(50), 절연스틱 4종[핫스틱(10), 로터스틱(10), 핸드스틱(10), 그랩스틱(10)] 주1) 각 장비 및 공구별 규격은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별표1~3] 및 배전 총액계약 시공회사 관리절차서 [별표1~4] 확보기준에 따름 주2) 시공회사별 1회 적용(다수 공사 적용 불가)	10 ~ 150	발생 시 (건 당)
	확인	구매증빙(세금계산서 등) 및 시험성적서 제출		

평가항목	평가방법		가점	주기
⑦ 정책 반영	기준	본사 처·실 내 정책 이행 시 주1) 시공회사별 1회 적용(다수 공사 적용 불가)	최대 250	달성 시
	확인	해당 처·실 정책 이행 관련 공문 내용 및 가점 참조		
⑧ 자율 안전관리 참여	기준	ⓐ 재해방지책임자(또는 시공관리책임자) 안전 관련 자격증 보유 및 취득 주1) 안전관련 자격증 : 국가공인 안전관련 산업기사 이상	50	건
		ⓑ 재해방지책임자(또는 시공관리책임자) 안전 관련 외부기관 안전교육 참여 주2) 외부 안전교육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직무교육기관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교육	20 (최대 100/년)	건 (4H 이상)
	확인	ⓐ 자격증 사본 제출 ⓑ 교육수료증 사본 제출		
⑨ 스마트 안전 장비 사용	기준	계약기간 내 스마트 안전 장비 사용	구매	사용
		▸관제용 이동형 CCTV	-	200
		▸차량계 건설기계, 하역 운반기계 등 스마트 안전장치	70	100
		▸에어백 조끼	50	75
		▸스마트글래스, 이동형 CCTV, 바디캠(관제 미지원)	20	30
		주1) 구매는 최초 1회만 부여하며, 사용은 매분기별로 부여 주2) 스마트 안전 장비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임대할 경우 사용 가점만 부여(구매 가점 미부여) 주3) 당일 작업이 있는 공사들 중에서 1개 이상 현장에서 스마트 안전 장비를 항상 사용하여야 하며, 미사용 적발시 해당 분기 사용 가점 미부여 주4) 관제용 이동형 CCTV는 협력회사 사무실에서 재해방지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등이 직접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되어야만 가점을 부여하며, 1대 추가 운영시마다 100점/분기 가산 주5)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는 무선통신을 통해 기기(모니터, 카메라, 감지장치, 무선통신기, 그 밖의 기타 장치 등) 간 연결되어야 하며, 운전자 모니터에는 충돌방지 현황(실시간 영상, 인체충돌 및 기타 위험 정보 등)이 표시되고 충돌 위험시 경보가 울려야만 가점 부여 주6) 에어백조끼는 협력회사 상근 I 무정전전공 확보인원 이상 구매·사용시 가점 부여		매분기
	확인	구매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 제출, 시스템(작업안전 실적입력 시스템) 모니터링 및 증빙자료(공사건별 사용내역) 제출을 통한 분기별 사용실적 확인		

7.4.1 분기평가시 ①, ⑤항목은 시스템으로 자동산정되며, ②, ③, ④, ⑥, ⑦, ⑧, ⑨번 항목은 협력회사가 증빙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 부여한다.

7.4.2 ①항목은 고압 전문회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전문회사가 상근 I 무정전전공 기준인원(5명)을 초과하여 고용하더라도 5명의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지속고용 대상 인원에 대해 '7.5'항의 패널티 마일리지(③-ⓒ)가 부여된 이력이 있는 경우 대상 인원에서 제외한다.

분 류		1년차	2년차	3년차
평가기간		1년차 7월~2년차 6월	2년차 7월~3년차 6월	3년차 7월~4년차 6월
가점	상근 I	250	275	300

※ 2~3년차 인센티브 할증 부여는 동일한 인원(5명)이 2~3년차 지속되는 경우에 한하며, 변경된 인원으로 1년씩 지속 고용하는 경우 1년차 가점으로 부여한다.

7.4.3 ⑦ 정책반영의 경우 협력회사 계약기간 중 발송된 공문에 한한다.

7.4.4 ⑥ 장비교체 중 공사용개폐기는 인터록(결상, 상불일치시) 기능이 구비된 신품 장비 구매에 한한다.

7.4.5 저압 협력회사의 경우 ⑥ 장비교체 중 이동용 변압기차 또는 장치, 바이패스케이블, 공사용개폐기, 절연스틱(4종)의 구매나 교체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4.6 ⑤ 항목은 대표자가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당일에 다수의 공사에서 안점점검을 수행하더라도 30점만 부여한다.

7.4.7 ⑧ 항목은 협력회사 계약기간 중 자격증 보유/취득 및 안전교육에 참여한 경우에 한한다.

7.5 패널티 마일리지 평가항목(협력회사)

평가항목	평가방법	감점	주기
① 무단작업 또는 시공방법 임의 변경	공사감독자 승인없이 무단 작업 또는 시공방법(간접활선 등 공법 변경) 임의 변경한 경우	500	건
② 대외민원 유발	시공지연, 부실공사, 기자재 관리 미흡으로 민원 유발 시 주1) 언론보도(인터넷, 신문 등), 대내·외 감사지적, 지자체 등 행정기관 시정 명령, 과태료, 시민재해(넘어짐, 교통사고 등) 발생 시 등	300	건
③ 기능인력 부적정 운영	ⓐ 계약기간동안 기신고된 인원 확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작업통보서와 현장의 기능인력이 상이한 경우 - 작업통보서에 기재되지 않은 기능인력이 공사에 참여한 경우 - 작업통보서에 기능인력을 보통인부로 기재하고 현장에서 기능인력 자격의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협력회사에 소속된 기능 인력을 타회사 공사에 투입하여 공사한 경우 ⓓ 월별 상근 I 무정전 전공의 무정전공사 시공현장 참여율이 월 60% 미만인 경우	500	매 적발시
④ 필수장비 및 기자재 부적정 운영	ⓐ 계약기간동안 기신고 된 장비 및 야적장, 현장사무소 확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작업통보서와 현장의 장비가 상이한 경우 ⓒ 협력회사에 소속된 장비를 타회사 공사에 투입하여 공사한 경우	500	매 적발시
	ⓓ 시공자재 임의변경 또는 사급자재 손망실이 확인된 경우	300	
⑤ 지시 불이행	ⓐ 정책변경, 중점 요구사항, 협력회사 수행공사 미 이행 ⓑ 사업소에서 참석 요청한 회의 및 교육 불참	100	건
	ⓒ 협력회사(전문회사, 협력사, 저압 협력회사)가 시공을 적기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주1) 분기별 정기 영업업무 심의위원회 결과, 협력회사측 사유로 인한 시공지연 대상이 5건 이상이고 전체 영업업무 심의위원회 대상 공사의 10% 이상인 경우	300	매분기
	ⓓ 선착공 통보 후 협력회사(전문회사, 고·저압 협력회사)의 현장소장 또는 시공관리책임자가 5시간 이내 작업현장 미도착 시	300	건
	ⓔ 선착공 통보 후 협력회사(전문회사, 고·저압 협력회사)의 현장소장 또는 시공관리책임자가 2시간 초과하여 작업현장 도착 시	100	건
	ⓕ 공사건별 시공품질 평가결과 분기별 평균 누계 감점점수가 10점 이상인 경우	100	매분기
	ⓖ 저압정전복구공사 수행 시, 고객응대 미흡, 정전복구지연 등으로 전기원이 현장 출동한 경우	최대 100	매월

평가항목	평가방법		감점	주기
⑥ 시공관리책임자 상주 위반	시공관리책임자 현장 미상주 시		500	매 적발시
⑦ 정전 유발	작업중 또는 공사하자로 정전발생	일시정전(A~C등급)	700	발생시
		일시정전(D등급)	400	
		순간정전	300	
		순시정전	200	
	주1) 누적 패널티는 적용 제외 (7.5.10 참조)			
⑧ 실사결과 부적합	협력회사가 실사서류 미제출 및 실사결과 부적합 판정 시		500	건
⑨ 시공도면 불일치에 따른 계통변경 작업	협력회사에서 제출한 시공(계통)도면과 현장시공 계통이 불일치하여, 계통변경 작업(번호찰 및 도면 수정 등) 추가 수행 시		100	건

7.5.1 각 평가항목은 발생시 업무담당자가 제재 등록하며, ③-ⓓ, ⑤-ⓕ항목은 분기 평가시 시스템으로 자동 산정된다.

7.5.2 동일한 사유로 다수의 패널티 항목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배점이 가장 큰 항목만 적용한다. 단, 시공지연으로 인해, ②와 ⑤-ⓒ 항목이 동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도 적용한다.

7.5.3 ⑤-ⓓ, ⑤-ⓔ 항목의 경우 비연륙 도서 지역의 경우 예외로 한다.

7.5.4 ③-ⓓ항목의 무정전공사 참여율 산정 방법= $\frac{B^{**}}{A^{*}} \times 100\%$ (개인별산출)

* A : 월별 협력회사의 무정전공사 발생 일수

** B : A의 무정전공사 중 상근Ⅰ 무정전전공 QR 출석 일수

가) 해당 협력회사의 무정전공사 발생일에 무정전전공이 해당 협력회사의 타 사선공사(동일계약)에 참여한 경우는 무정전공사 참석으로 인정한다.

나) 현장 참여율은 해당 협력회사에 상근Ⅰ으로 등록되어 있는 무정전전공 전체 인원에 대하여 개별 산출되며, 현장참여율이 높은 순으로 무정전전공 기준인원(전문회사 5명, 협력사 3명)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다) 현장 참여율에 미달되는 인원이 1명 이상 발생시 패널티 마일리지 500점을 부여하며, 해당 인원이 해명 가능한 사유(경조사 등)로 이의제기 후 이를 마일리지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마일리지 분기평가 시 패널티 적용을 제외한다.

7.5.5 ⑤-ⓑ번 항목 적용 시, 회의 및 교육 참석 요청 공문 전달 등 당사가 협력회사

에게 공식적으로 참석을 요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7.5.6 ②, ③-ⓐ, ④-ⓐ, ⑤-ⓒ 항목 적용 시, 패널티 마일리지 부여 후 공문으로 시정조치 시기를 지정하였으나, 이를 다시 초과한 경우 패널티를 추가로 부여한다.

7.5.7 ①, ②, ③-ⓑ, ④-ⓑ, ⑤-ⓓ, ⑤-ⓔ, ⑥ 항목은 시공통보 대상 공사가 여러 건이더라도 작업통보서를 발행한 당일 작업에 한해 1회만 부여한다.

7.5.8 ② 항목의 경우 시공지연, 부실공사, 기자재 관리 미흡 각각에 대해 별도 적용하며, 시공지연에 따른 대외민원 유발 시, 협력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7.5.9 ⑤-ⓒ 항목에 따른 시공지연 발생 이후 차분기 정기 영업업무 심의위원회 결과, 시공지연 대상 건을 모두 해소하였을 경우에는 부여한 패널티의 50%(150점)를 감경한다.

7.5.10 ⑤-ⓖ 항목은 '저압정전복구공사 위탁 사업소'에 적용하며, 출동 횟수 3회부터 10점, 4회 20점, 5회 30점 등 단계적으로 가산하여 부과한다. 단, 재해재난 또는 우천에 의한 기상악화 등 특수상황 시 패널티를 제외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저압정전 복구공사 업무처리절차서"를 따른다.

7.5.11 ⑦ 항목 적용 시, 계약번호 단위로 관리되는 누적 패널티는 적용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관리되는 패널티 마일리지만 적용한다. 또한 무단작업 또는 안전장구 미착용으로 인한 경우는 패널티 마일리지에 2배 가중치를 적용한다.

8. 배전 총액계약 시공회사 인센티브·패널티 부여

8.1 적용대상 : 배전 총액계약 시공회사(이하 '총액회사')

8.2 인센티브, 패널티 마일리지 부여방법

8.2.1 총액회사의 인센티브 마일리지는 시스템을 통해 계약기간내 매분기(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계 제출 전) 단위로 부여한다.

8.2.2 패널티 항목은 '8.3'항에 따라 시스템을 통해 자동 산출되는 항목은 제외하고, 발생 즉시 공사담당자가 부여(누적 패널티는 시스템을 통해 즉시 제재 등록,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관리되는 패널티는 매 분기평가 이후 적용)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잔여(하자)공사 수행시에도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관리되는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가) 총액회사는 패널티 부여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재등록 후 5일 이내 [서식 2] 양식을 활용하여 공사담당자에게 이의를 신청한다.

나) 총액회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공사담당자는 이의신청 사유를 검토하고, 필요시 10일 이내 마일리지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계약의 계약해지 여부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해 '7.3'항의 협력회사 마일리지 분기평가 마일리지 심의위원회에서 함께 심의할 수 있다.

8.3 인센티브, 패널티 마일리지 평가

분기말 기준	수행주체	내 용
D+10	시스템 자동배치	○ 시스템 자동계산 항목 평가, 등록 가·감점 내역 집계 ※ 분기말 이전 공사완료 시 준공계 접수시점에 내역 집계
D+11 (업무시작)	공사 담당자	○ 시스템 산정내용 확인 → 업체통보
D+16	총액회사	○ 인센티브 입력(증빙첨부), 시스템 산정 내역 이의신청
D+30	공사 담당자	○ (이의신청無) 업체 입력내용 확인 및 확정
		○ (이의신청有) 이의신청건 검토, 필요시 마일리지 심의위 상정
		↳ 마일리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심의결과 입력 및 확정
D+31	시스템 자동배치	○ 마일리지 최종 집계 및 합산마일리지 갱신(파트너스웹 포함)

8.3.1 진행중인 공사의 경우 공사담당자는 매분기 마감 10일 이후, 시스템에서 자동

으로 산정된 직전분기의 인센티브, 패널티 마일리지에 대해 확인한 후 업체에 통보하고, 준공 예정인 공사의 경우 총액회사는 준공계 제출 20일 전에 인센티브, 패널티 마일리지 시스템 자동배치를 요청하며, 공사담당자는 인센티브, 패널티 마일리지에 대해 확인한 후 업체에 통보한다.

8.3.2 총액회사는 인센티브, 패널티 마일리지를 통보 받은 후 5일 이내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시스템에 입력하고, 필요 서식 및 증빙자료를 해당 사업소에 제출한다.

가) 인센티브 : 시스템 자동산정내역 확인, 인센티브 추가·수정사항 제출(증빙첨부)

나) 패 널 티 : 시스템 자동산정내역 확인, 직전분기 또는 준공계 접수 전 집계내역 확인 및 [서식 2] 활용 추가 이의신청(이의신청 완료건 재신청 불가)

8.3.3 공사담당자는 '8.3.2'항의 총액회사 입력내용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5일 이내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인센티브, 패널티 마일리지를 확정한다. 공사담당자는 총액회사 입력내용 및 증빙이 불충분한 경우 총액회사에 추가로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후 3일 이내 적절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입력사항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8.3.4 총액회사의 이의신청 건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해 심의가 필요한 경우 공사담당자는 이의접수 10일 이내 마일리지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업체에 통보한다.

8.3.5 분기평가(준공계를 제출한 경우 준공계 접수일) 기간 내 입력되지 않은 인센티브 마일리지는 추후 소급하여 부여하지 아니한다.

8.4 인센티브 마일리지 평가항목(총액회사)

평가항목	평가방법		가점	주기
① 필수 보유인력 유지	기준	계약 시 신고된 인원의 공사 참여율 총합*이 80% 이상일 시 가점부여 *공사참여율=$\frac{\sum \text{계약시 신고인원의 공사 참여 건수}}{\text{계약시 신고인원} \times \text{공사통보건수}}$	200	준공계 제출시
	확인	작업통보서 QR 및 영배정보시스템 실적 점검		
② 근로자 재해 대책	기준	ⓐ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 시	100	계약시
	기준	ⓑ 단체 상해보험 가입 시 주1) 배전 총액계약 시공회사 관리절차서 '5.5.1.가)'항에 따른 공사유형별 인원 수 이상	50	매분기
	확인	분기별 보험가입증서 제출		
③ 대표자 안전관리 활동	기준	총액회사 대표자 주관 현장 안전점검 - 자체점검 : 30점/건 주1) 재해방지책임자가 점검시작 QR을 전송하고, 30분 이후 종료 QR 전송건에 대해서만 인정(당일 안전점검 지적 시 무효)	30 (최대 900/분기)	건
	확인	자체점검표, 점검사진(현장식별이 가능토록 입간판 포함하여 촬영) 제출 [서식6~7] 및 대표자 QR 실적 확인 후 시스템 자동 산정		
④ 정책반영	기준	본사 처·실 내 정책 이행 시 주1) 시공회사별 1회 적용(다수 공사 적용 불가)	최대 250	발생시
	확인	해당 처·실 정책 이행 관련 공문 내용 및 가점 참조		
⑤ 안전관리 위탁/선임	기준	법정 비대상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자 위탁 유지시	75	매분기
	기준	법정 비대상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자 선임 유지시	150	
	기준	주1) 시공회사별 1회 적용(다수 공사 적용 불가)		
	확인	분기별 안전관리자 선임 필증 혹은 위탁계약서 제출		
⑥ 안전관리 우수협력 회사	기준	본사주관 안전관리 우수협력회사 선정시(년 1회) 주1) 시공회사별 1회 적용(다수 공사 적용 불가)	500	선정시
	확인	우수협력회사 선정 공문 제출		

평가항목	평가방법		가점		주기
⑦ 스마트 안전 장비 사용	기준	계약기간 내 스마트 안전 장비 사용	구매	사용	건
		▸관제용 이동형 CCTV	-	10	
		▸차량계 건설기계, 하역 운반기계 등 스마트 안전장치	70	5	
		▸에어백 조끼	50	3	
		▸스마트글래스 및 이동형 CCTV, 바디캠(관제 미지원)	20	2	
		주1) 구매는 최초 1회만 부여 주2) 사용은 공사 건별로 부여하며, 분기별 최대 가점은 각 사용 가점의 30배까지 부여 주3) 스마트 안전 장비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임대할 경우 사용 가점만 부여(구매 가점 미부여) 주4) 관제용 이동형 CCTV는 총액회사 사무실에서 재해방지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등이 직접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되어야만 가점 부여 주5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는 무선통신을 통해 기기(모니터, 카메라, 감지장치, 무선통신기, 그 밖의 기타 장치 등) 간 연결되어야 하며, 운전자 모니터에는 충돌방지 현황(실시간 영상, 인체충돌 및 기타 위험 정보 등)이 표시되고 충돌 위험시 경보가 울려야만 가점 부여 주6) 에어백조끼는 배전 총액계약 시공회사 관리절차서 '5.5.1.가)'항에 따라 공사유형별로 요구하는 인원 수(무정전 및 활선전공만 해당) 이상 구매·사용시 가점 부여	최대 (60~300/분기)		
	확인	시스템(작업안전 실적입력 시스템) 모니터링 및 증빙자료(공사건별 사용내역) 제출을 통한 분기별 사용실적 확인			
⑧ 장비 교체	기준	계약기간 내 장비, 공구의 신품 구매 및 교체 - 항목별 가점 : 절연버켓트럭(150), 이동용 변압기차 또는 장치(75), 바이패스케이블(75), 공사용개폐기(50), 절연스틱 4종[핫스틱(10), 로터스틱(10), 핸드스틱(10), 그랩스틱(10)] 주1) 각 장비 및 공구별 규격은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별표1~3] 및 배전 총액계약 시공회사 관리절차서 [별표1~4] 확보기준에 따름 주2) 시공회사별 1회 적용(다수 공사 적용 불가)	10 ~ 150		발생 시 (건 당)
	확인	구매증빙(세금계산서 등) 및 시험성적서 제출			

평가항목	평가방법		가점	주기
⑨ 숙련된 일용 기능인력 작업 유도	기준	ⓐ 작업통보서에 신고된 일용원 기능인력(유도자, 교통신호수 제외)이 배전 총액계약 시공회사 관리절차서 '5.5.1.가)' 항에 따른 공사유형별 인원의 100% 미만 ⓑ 작업에 포함된 일용 기능인력이 1년 이내에 무정전·지중배전 공사 참여실적이 100H 이상 ※ QR을 통해 일용원 시스템 등록시, 시스템으로 자동산출되며, ⓐ&ⓑ 조건일 경우, 매 작업 건 마다 개인별 부여	5	발생 시 (인 당)
	확인	일용 기능인력 QR 실적 확인 후 시스템 자동 산정		
⑩ 자율안전 관리 참여	기준	ⓐ 재해방지책임자(또는 시공관리책임자) 안전 관련 자격증 보유 및 취득 주1) 안전관련 자격증 : 국가공인 안전관련 산업기사 이상	50	건
		ⓑ 재해방지책임자(또는 시공관리책임자) 안전 관련 외부기관 안전교육 참여 주2) 외부 안전교육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직무교육기관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교육	20 (최대 100/년)	건 (4H 이상)
		ⓒ 자체 안전관리 전담요원(산업·건설안전기능사 이상) 현장 배치 주3) 안전관리 전담요원 선임 계획서 및 현장배치 사전신고(배치신고 후 현장 미배치 적발시 패널티 50점/건, 현장에서 안전관리 보조업무 외 작업 병행 시행시 패널티 30점/건 부여)	10 (최대 300/분기)	건
	확인	ⓐ 자격증 사본 제출 ⓑ 교육수료증 사본 제출 ⓒ 선임 계획서 및 현장배치 실적 확인 ⓓ TBM 시행 여부 확인		

8.4.1 ①, ③, ⑨번 항목은 시스템으로 자동산정되며, ②, ④, ⑤, ⑥, ⑦, ⑧, ⑩번 항목은 준공계 제출 전(공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분기말 이후) 총액회사가 증빙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 부여한다.

8.4.2 ① 필수 보유인력 유지는 착공전 현장실사를 받은 필수 보유인력(배전 총액계약 시공회사 관리절차서 '5.5.1.가)')에 대하여 QR 출석을 통해 공사참여율을 계산한다.

8.4.3 ②-ⓐ 근로자 재해보험은 해당 계약(공사)건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시 적용한다.

8.4.4 총액회사가 협력회사 공사(단가공사) 또는 다른 총액계약 공사(총가공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동일 항목(②-ⓑ, ④, ⑤, ⑥, ⑧, ⑩-ⓐ,ⓑ) 인센티브를 중복으로 부여하지 아니한다.(총액계약용 별도 증빙 제출시 인정)

8.4.5 ⑩-ⓐ,ⓑ 항목은 총액공사 계약기간 중 자격증 보유/취득 및 안전교육에 참여한 경우에 한한다.

8.4.6 ④ 정책반영의 경우 총액공사 계약기간 중 발송된 공문에 한한다.

8.4.7 ⑧ 장비교체 중 공사용개폐기는 인터록(결상, 상불일치시) 기능이 구비된 신품 장비 구매에 한한다.

8.5 패널티 마일리지 평가항목(총액회사)

평가항목	평가방법	감점	주기
① 무단작업 또는 시공방법 임의 변경	공사감독자 승인없이 무단 작업 또는 시공방법(간접활선 등 공법 변경) 임의 변경한 경우	500	건
② 대외민원 유발	시공지연, 부실공사, 기자재 관리 미흡으로 민원 유발 시 주1) 언론보도(인터넷, 신문 등), 대내·외 감사지적, 지자체 등 행정기관 시정 명령, 과태료, 시민재해(넘어짐, 교통사고 등) 발생 시 등	300	건
③ 기능인력 부적정 운영	ⓐ 계약기간동안 기신고 된 인원 확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작업통보서와 현장의 기능인력이 상이한 경우 - 작업통보서에 기재되지 않은 기능인력이 공사에 참여한 경우 - 작업통보서에 기능인력을 보통인부로 기재하고 현장에서 기능인력 자격의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시공회사에 소속된 기능인력을 타회사 공사에 투입하여 공사한 경우 ⓓ 기신고된 필수 유자격 상근전공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3일 이내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	매 적발시
④ 필수장비 및 기자재 부적정 운영	ⓐ 계약기간동안 기신고 된 장비 확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작업통보서와 현장의 장비가 상이한 경우 ⓒ 시공회사에 소속된 장비를 타회사 공사에 투입하여 공사한 경우	500	매 적발시
	ⓓ 시공자재 임의변경 또는 사급자재 손망실이 확인된 경우	300	
⑤ 시공관리책임자 상주 위반	시공관리책임자 현장 미상주 시	500	매 적발시
⑥ 실사관련 서류 미제출 및 부적합	총액회사가 실사 관련 요구자료 미제출 또는 부적합시	300	건
⑦ 장기미준공 제재	공사기간 소진 (잔여공기 0일) 이후 준공 미완료 시 (잔여공기 0일 이후부터 30일 추가시마다 100점 가산, 추가 점수는 최대 1,000점까지 부여) 주1) 공사기간 소진 이후부터 시스템에서 일수 자동계산 및 패널티 부여	300	건
⑧ 지시 불이행	ⓐ 정책변경 및 중점 요구사항 미 이행 ⓑ 사업소에서 참석 요청한 회의 및 교육 불참	100	건
	ⓒ 총액회사가 시공을 적기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주1) 공사담당자가 시공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주 이내 공사 (재)착공을 하지 않을 경우(단, 시공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일 경우에는 제외)	300	건

평가항목	평가방법		감점	주기
⑨ 정전 유발	작업중 또는 공사하자로 정전발생	일시정전(A~C등급)	700	발생시
		일시정전(D등급)	400	
		순간정전	300	
		순시정전	200	
	주1) 누적 패널티는 적용 제외 (8.5.6 참조)			
⑩ 시공도면 불일치에 따른 계통변경 작업	총액회사에서 제출한 시공(계통)도면과 현장시공 계통이 불일치하여, 계통변경 작업(번호찰 및 도면 수정 등) 추가 수행 시		100	건

8.5.1 각 평가항목은 발생시 공사담당자가 제재를 등록한다.

8.5.2 동일한 사유로 다수의 패널티 항목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배점이 가장 큰 항목만 적용한다. 단, 시공지연으로 인해, ②와 ⑧-ⓒ 항목이 동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도 적용한다.

8.5.3 ② 항목의 경우 시공지연, 부실공사, 기자재 관리 미흡 각각에 대해 별도 적용하며, 시공지연에 따른 대외민원 유발 시, 협력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8.5.4 ⑧-ⓑ번 항목 적용 시, 회의 및 교육 참석 요청 공문 전달 등 당사가 총액회사에게 공식적으로 참석을 요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8.5.5 ②, ③-ⓐ, ③-ⓓ, ④-ⓐ, ⑧-ⓒ 항목 적용 시, 패널티 마일리지 부여 후 공문으로 시정조치 시기를 지정하였으나, 이를 다시 초과한 경우 패널티를 추가로 부여한다.

8.5.6 ⑨ 항목 적용 시, 계약번호 단위로 관리되는 누적 패널티는 적용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관리되는 패널티 마일리지만 적용한다. 또한 무단작업 또는 안전장구 미착용으로 인한 경우는 패널티 마일리지에 2배 가중치를 적용한다.

9. 성과보상

주관부서는 매년 상반기에 전년도 합산 마일리지 상위 업체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통해 아래와 같이 최우수 배전시공회사를 선정한다.

9.1 대상 및 선정

9.1.1 전년도 4분기말 기준으로 합산 마일리지 상위 10개 업체를 선정한다. 단, 전년

도 4분기말 기준으로 4년 이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9.1.2 최우수 배전시공회사 선정은 동일 업체에 대해 4년간 1회로 한정한다.

9.2 위원회 구성

구 분	위원장	위 원	간 사
대상	배전계획처장	본사 관련 처(실) 2~3직급 이상 6명	본사 주관부서 차장

※ 단, 위원장은 위원장의 장기 부재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할 수 있다.

9.3 위원회 운영

9.3.1 위원회는 위원의 2/3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9.3.2 위원장 및 간사는 회의의 진행과 토론에 참석하되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9.3.3 위원장은 심의일 5일 이전까지 위원을 선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9.3.4 위원장은 불가피한 경우 또는 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9.4 포상

9.4.1 최우수 배전시공회사는 포상으로 상패, 기념품, 휘장을 수여받으며, 누적 패널티 마일리지를 보유중인 공사에 대해 최대 1,000점까지 누적 패널티 소멸을 요청할 수 있다(다수 공사건에 대해 분할 소멸 가능). 단, 소멸 유효기간은 최우수 배전시공회사로 선정된 이후 1년 이내로 제한한다.

9.4.2 평가기준 및 포상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해년도 수립 계획에 따라 결정한다.

10. 유효성평가

본 절차서는 1년 주기로 유효성 평가를 시행한다.

11. 부록

[별표 1] 배전 시공회사 마일리지 관리 업무흐름도

[별표 2] 배전 시공회사 계약해지 업무 흐름도

[별표 3] 시공통보 이행지연 패널티 업무 흐름도

[별표 4] 정책반영 인센티브 부여 업무 흐름도

[별　첨] 공통서식

[서식 1] 배전 시공회사 마일리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서식 2] 배전 시공회사 마일리지 점수 이의신청서

[서식 3] 배전 시공회사 마일리지 안내(배전부서용)

[서식 4] 공사이행 보증변경 요청(계약부서용)

[서식 5] 위약벌 감경 신청서

[서식 6] 공사현장 자체 안전관리 점검표

[서식 7] 공사현장 자체 안전관리 실적 제출 양식

[서식 8] 신생업체 안전경영노력도 가점 확인서

【별표 1】배전 시공회사 마일리지 관리 업무흐름도

□ 분기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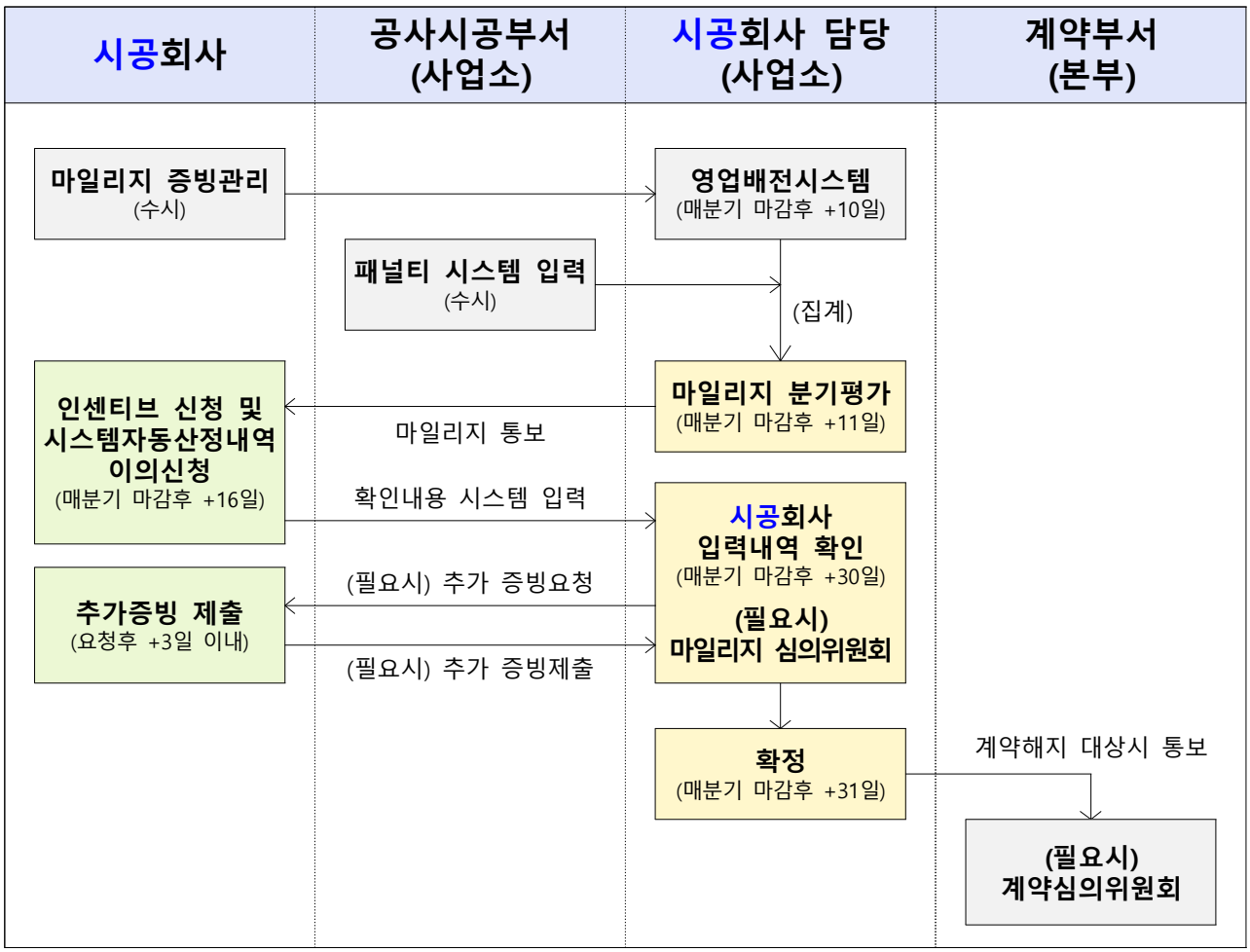

□ 위약벌 감경 업무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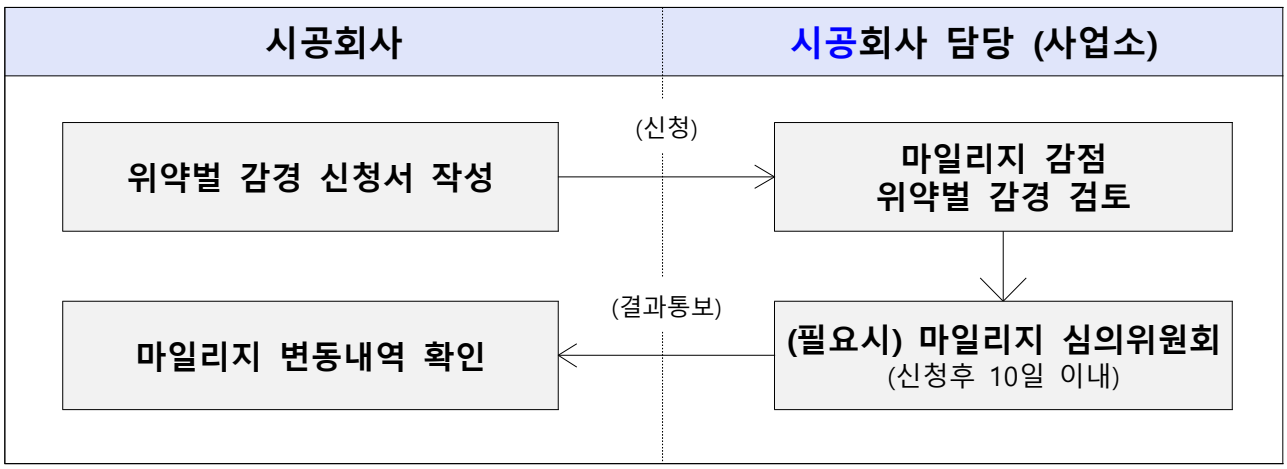

【별표 2】배전 시공회사 계약해지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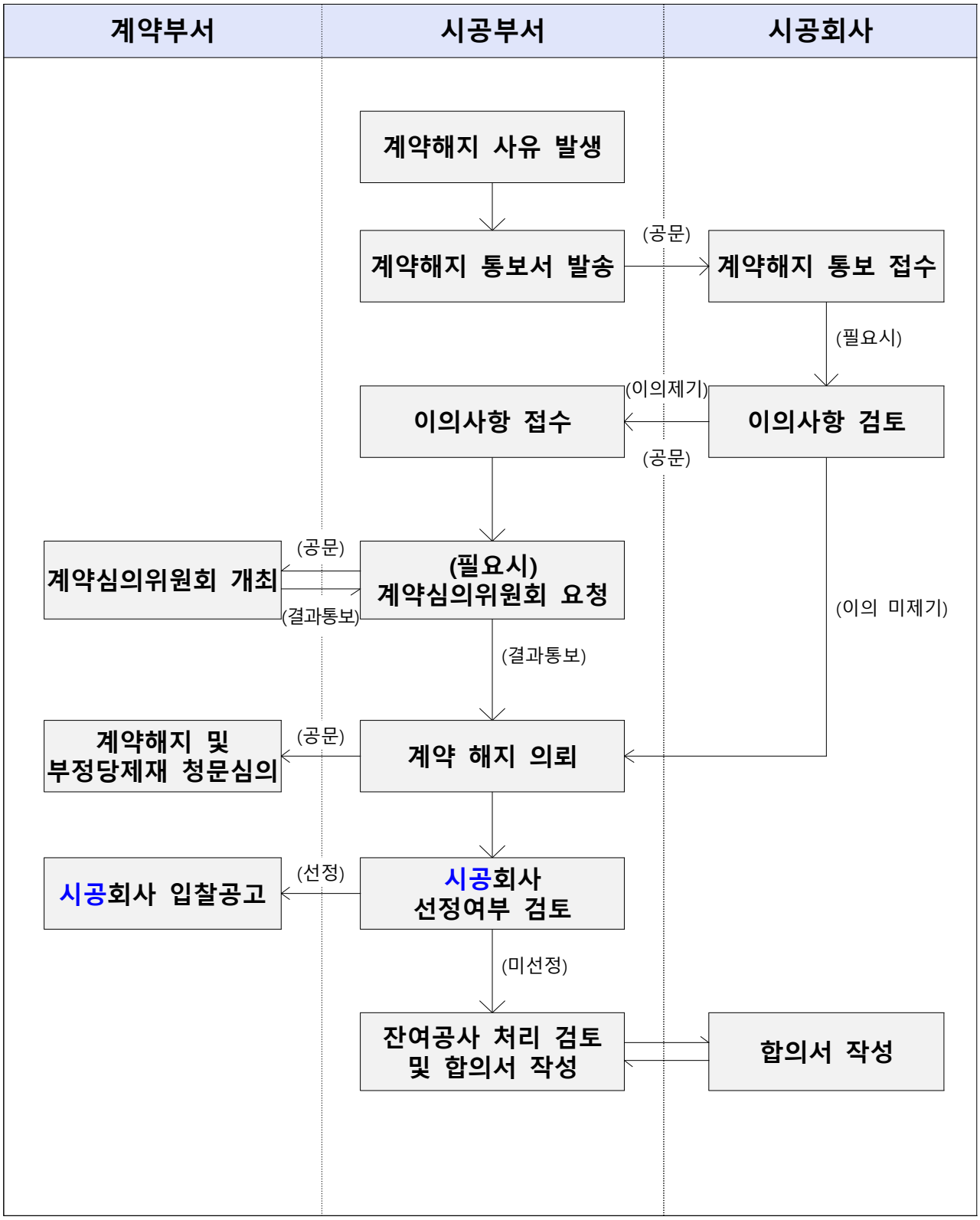

【별표 3】시공통보 이행지연 패널티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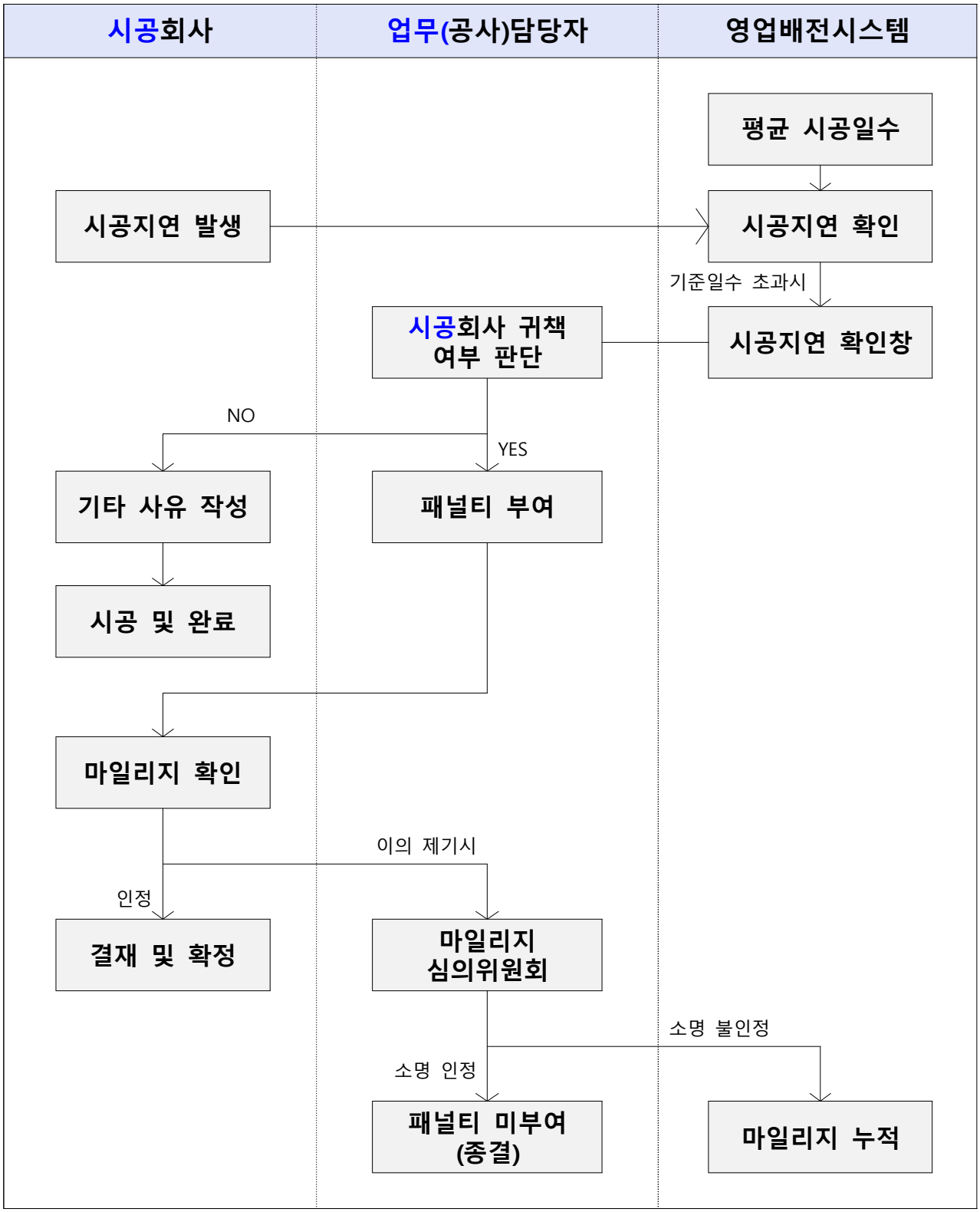

【별표 4】정책반영 인센티브 부여 업무 흐름도

□ 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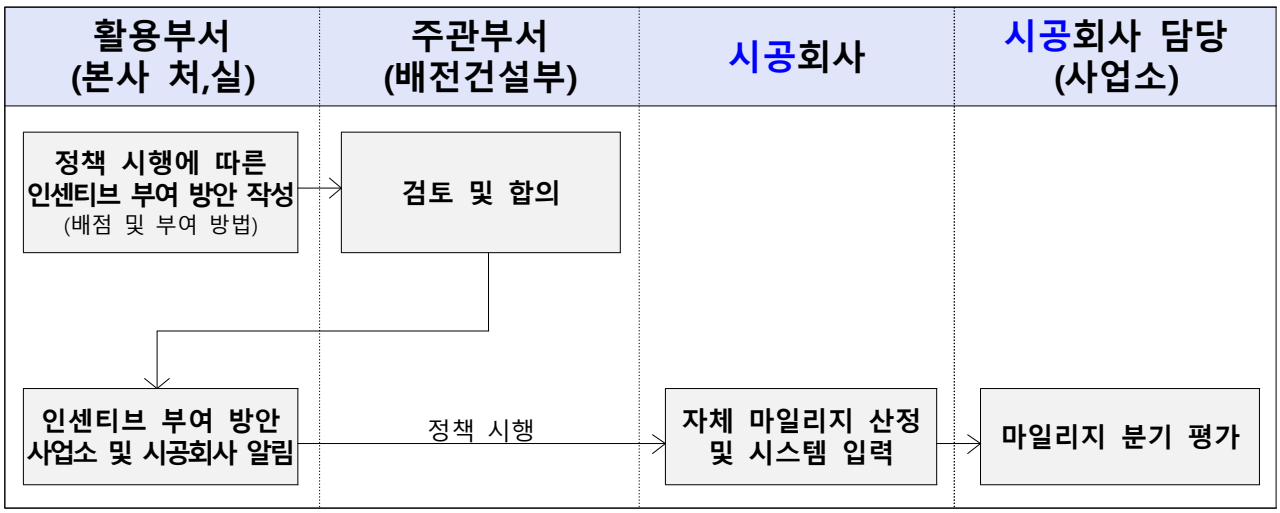

□ 공문 예시

제목 **『QR 활용 현장투입 신고제』**확대 적용 및 전문회사 관련 사항 알림

배계(건설)-000(0000.00.00)관련으로 모바일 App 활용 현장 투입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사전신고와 일치 시 시공회사 인센티브에 반영코자 하오니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할 전문회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QR 활용 현장 투입신고 대상 단계적 확대

□ (1단계) 전문회사 QR 활용 대상 확대 : '00. 00. 00.

	현 행		확 대
공사	고압 전문회사의 무정전 공사	⇒	고압·지중 전문회사의 全 공사
가능인력	무정전·활선		무정전·활선, 가공배전, 지중배전

2. 인센티브 부여 방안

□ (배점) 건당 5점(최대 250점)

□ (부여방안) 사전신고와 QR 출석 인원이 일치 시 건당 인센티브 부여

※ 사업소 혼선을 피하기 위해 배점과 부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

【별　첨】공통서식

공 통 서 식

【서식 1】배전 시공회사 마일리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배전 시공회사 마일리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 심의일자 :

2. 심의장소 :

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N0.	심의내용	심의결과	비고

4. 심의위원회

○ 위원장 :

○ 간 사 :

○ 위 원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붙임 : 위원별 심의의견

[붙임]

위원별 심의의견

□ 심의일자 :

□ 심의의견

N0.	심의결과	의견

□ 심의위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서식 2】배전 시공회사 마일리지 점수 이의신청서

배전 시공회사 마일리지 점수 이의신청서

1. 마일리지 점수 산정내역

No.	일자	항목	점수
1			
2			
3			

2. 이의신청 사유

No.	이의신청 세부내역
1	
2	
3	

3. 관련증빙(별도첨부)

□

□

2026. 00. 00

신청인 : OOOOO회사 대표 OOO (인)

(사업자번호 :)

【서식 3】 시공회사 마일리지 안내(배전부서용)

☏ FAX

문서번호
시 행 일
보존기간
공개구분
수신

참조

선람			지시		
공람			접수	번호	
				일시	
			처리	부서	
				담당	

제목 시공회사 마일리지(감점) 2,500점 초과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평소 전력사업의 많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배전공사 시공회사 인센티브·패널티 제도 업무절차서」에 따라 산정된 귀사의 누적 마일리지 감점이 아래와 같이 2,500점을 초과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대 상 : OOO전기(2023년 OO지사 고압 A), 사업자번호(000-00-00000)

나. 마일리지 감점 누계 : 0,000점

○ (2000.00.00) OOOO 사항과 관련하여 누적 감점 0,000점

다. 기 타 : 마일리지 누적 감점이 3,000점 초과될 경우 계약해지 요건이 충족되며 계약심의위원회 회부 대상임

OO본부장

【서식 4】공사이행 보증변경 요청(계약부서용)

☏ FAX

문서번호
시 행 일
보존기간
공개구분
수신

참조

선람			지시		
공람			접수	번호	
				일시	
			처리	부서	
				담당	

제목 배전공사 시공회사 계약보증방법 변경계약 요청

1. '22. 12. XX 계약체결된 「2023년 ○○본부 ●●지사 고압A 공사」 관련입니다.

2. 상기 계약의 시공업체 패널티가 누적 2,500점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계약사항

항 목	내 용	비 고
1. 계약명	2023년 ○○본부 ●●지사 고압A 공사	
2. 계약업체명	㈜◇◇전력(사업자번호:000-00-00000)	
3. 추정계약금액	10,000,000,000	VAT포함
4. 계약보증금	1,500,000,000	전기공사공제조합
5. 누적지급액	2,000,000,000	'23. 4. 11
6. 시공업체 패널티	2,650점	기준

나. 계약보증방법 변경사항

구 분	기 존	변 경
1. 증권금액	1,500,000,000	4,000,000,000
2. 보증방법(율)	계약보증(15%)	공사이행보증(40%)
3. 보증기간	'23. 1. 1 ~ '24. 12. 31	'23. 4. 11 ~ '24. 12. 31

다. 근거조항 :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13. X.

붙 임 : 1. 변경계약동의서 1부

2. ㈜◇◇전력 시공업체 패널티 관리대장 1부. 끝.

OO본부장

【서식 5】위약벌 감경 신청서

위약벌 감경 신청서

1. 누적 마일리지 현황

기준일자	시공회사명 (사업자번호)	보유 마일리지	
		가점	감점
2026.00.00	OO전력 ( )	1,000	200

2. 위약벌 감경 신청

□ 신청내역

위약벌 부여일	항목	세부내역	위약벌	감경신청벌금	차감 마일리지
2026.00.00	고압정전	000공사	500만원	500만원	500점

※ 1패널티 마일리지 = 1만원

3. 마일리지 변동내역

기준일자	시공회사명 (사업자번호)	인센티브 마일리지	
		변경 전	변경 후
2026.00.00	OO전력 ( )		

2026. 00. 00

신청인 : OOOOO회사 대표 OOO (인)

【서식 6】공사현장 자체 안전관리 점검표

공사현장 안전관리 점검표 [시공회사]

점검주관	업체명		대표자	(서명)
	점검일			
점검대상	사업소명		감독자명	
	공사명		공사번호	

점검 항목	세부 점검 내용	이상여부 (O / X)
① **(안전장구)** 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등 작업에 적정한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 착용 * 안전모 턱끈 미조임 시 미착용으로 간주 * 안전고리 미체결시 미착용으로 간주	
② **(활선작업)** 충전부 근접 작업 시 충전부 **방호** 및 **절연용 보호구** 착용	▫ 전기 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 방지 ▫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방지	
③ **(휴전작업)** 휴전된 선로 작업전 **검전 및 접지** 후 작업	▫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 전기 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 조치 ▫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 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④ **(고소작업)**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안전고리 항시 체결**	▫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 비계의 위험 방지	
⑤ **(사다리작업)** 이동식 사다리에서 **작업 금지**	▫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준수	
⑥ **(개구부)**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 조치**	▫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⑦ **(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 밀폐공간 내 작업시의 조치 등 ▫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	
⑧ **(중장비작업)** 중장비 작업 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안전조치 ▫ 양중기(이동식크레인, 리프트 등) 안전조치 ▫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⑨ **(충분한휴식)** 근골격계 질환 및 혹한, 혹서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시행	▫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 휴게시설 설치 등	
⑩ **(기타사항)**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 음주작업 금지, 현장 내 음주하지 않기 등 ▫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지정된 장소 외 흡연 등의 금지	
⑪ **(작업중지)**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 시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 위험 상황임에도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	

확 인	시공회사명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연락처 :
	감리회사명		상주감리	성 명 : (인) 연락처 :

【서식 7】공사현장 자체 안전관리 실적 제출양식

(점검사진)	(점검사진)	(점검사진)
ex) 8.26(화) 공사현장 점검 사진(1)	ex) 8.26(화) 공사현장 점검 사진(2)	ex) 8.26(화) 공사현장 점검 사진(3)
(점검사진)	(점검사진)	(점검사진)
ex) 9.5(화) 공사현장 점검 사진(1)	ex) 9.5(화) 공사현장 점검 사진(2)	ex) 9.5(화) 공사현장 점검 사진(3)
(점검사진)	(점검사진)	(점검사진)
ex) 9.17(수) 공사현장 점검 사진(1)	ex) 9.17(수) 공사현장 점검 사진(2)	ex) 9.17(수) 공사현장 점검 사진(3)

【서식 8】 신생업체 안전경영노력도 가점 확인서

신생업체 안전경영노력도 가점 확인서

1. 협력회사명 : 주식회사 □□□□
2.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3. 안전경영노력도 가점 : 0.1점

당사는 배전공사 시공회사 인센티브·패널티 제도 업무절차서 6.7.2.나) 항에서 규정하는 신생업체에 해당되므로, 상기와 같이 안전경영노력도 가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 00. 00

확인자 : 주식회사 □□□□ 대표 ○ ○ ○ (인)